

報 道 資 料

이 자료는 2000. 1.24(월) 조간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題 目 : 「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개정

主要內容

- 정부는 지난해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
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한 데 이어
 - 동법 시행을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대상이 되는 대형 상장
법인의 범위를 자산총액 2조원이상으로 정하는 등 증권거래법
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음
 -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임
 - 개정안 주요내용
 - 사외이사 수가 확대되고,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대형
상장법인의 범위를 “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회사”로 정함
 - “최근 3년간 거래실적이 당해 회사 매출액의 10%이상인 회사”
등 당해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의
임·직원은 사외이사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함
 - 회사의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으로 겸직하는 경우 현재는
당해회사 및 계열회사로부터 스탁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었으나
상근하는 회사에서는 스탁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
- ※ 별첨 : 「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」

報道資料生産課 : 證券制度課

(TEL: 500-5363~5)

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 室

43

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

1. 기업·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

- 99.12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거래법 국회통과
 - 「대형 상장법인 및 대형 증권회사」에 대하여 ①감사위원회 설치의무화, ②사외이사 선임비중 확대(총이사의 1/2이상, 다만, 대형 상장법인은 2001년부터) ③사외이사요건 규정 등
-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2월말이후 주총에서 각 기업이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

<개정 내용> : 시행령 개정사항

① 기업지배구조개선의 대상이 되는 대형 상장법인 및 증권회사의 범위 규정

- 대형 상장법인 : 자산총액 2조원이상(총 75사중 92사)
- 대형 증권회사 :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종합증권사(총 34사중 8사)

② 법률에서 위임된 사외이사 결격요건 규정

- 법률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요건은
 - i)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ii)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iii)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근 임·직원(최근 2년 이내 상근임·직원이었던 자 포함) 등이며
 - i) 당해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나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(최근 2년 이내 상근임·직원이었던 자 포함)과 ii)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곤란한 자를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

○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함

① 중요한 거래관계나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

- 최근 3년간 거래실적이 당해 회사 매출액의 10%이상인 법인
- 최근 사업연도중 당해 회사와의 금전거래 및 담보제공등 채무 보증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%이상인 법인
- 당해 법인과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법인
- 당해 법인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등

②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곤란한 자의 범위

- 3개이상(상부에 종사하는 직업이 있는 경우 1개이상)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중인 자 등
- * 사외이사 결격요건은 그 동안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하였던 증권 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있던 내용임

2. 스타트업 제도 개선

Ⅰ 스타트업 부여대상자 제한 완화(시행령 개정사항)

- 최대주주가 스타트업을 이용하여 지배지분을 확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(친·인척, 계열사 임원등)은 스타트업 부여대상자에서 제외
- 따라서, 회사임원이 계열회사(예 : 해외 현지판매법인)의 비상근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스타트업을 받을 수 없음
 - ⇒ 최대주주의 친·인척이 아닌 임원이 계열사의 비상근임원을 겸임한다고 해서 스타트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
 - * 일부기업에서는 해외 현지판매법인등의 임원겸직기피사해
- 개정 : 상근하는 회사에서 스타트업을 부여 받을수 있도록 함

② 스탁옵션 최저행사가격 산정기준 변경(시행규칙 개정사항)

- 현재 스탁옵션 부여시 행사가격은 시가(時價)이상으로 하고 있고 시가의 산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산정기준을 사용
- 지난해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으로 산정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새로이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함
- 개정 : (부여일전 2월, 1월, 1주간 거래량가중증가평균 합계)/3

현행(증권거래법시행령)	개정(상속세및증여세법)	개정(증권거래법시행령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 산정기준 준용 - 부여일전 3월간증가평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가산정기준 - 부여일 이전 및 “이후” 2월간 증가평균 ⇒ 부여일에 행사가격을 확정할 수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식매수청구권행사시 주식시가 산정기준 준용 - (부여일전 2월, 1월, 1주간 거래량가중증가평균 합계)/3